

〈제2차, 제3차 본회의〉

의장·부의장 선거시 무효·기권처리표

□ 무효처리 투표

- 지정된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용지
- 의원이 아닌자의 성명을 기재한 용지
- 의원 성명 이외의 것(이상한 표시등)을 기재한 용지
- 2인 이상의 의원 성명을 기재한 용지
-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용지
- 의원 성명을 정정한 용지
- 부의장 선출시 이미 선출된 의장 성명을 기재한 용지

□ 기권처리 투표

-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

□ 상황발생시 처리 방침

1. 투표용지 교환 불가

2. 유효·무효·기권표 판단 등

- 투표용지의 유효·무효·기권표의 판단은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함.
- 투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장은 감표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함.

3. 투표시 명패수와 투표수가 다를 경우

-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
 - 투표수보다 많은 명패수를 기권처리함.
-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
 -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 투표를 한다. 다만,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(회의규칙 42조③항)